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 안 번 호	1322
------------	------

제출년월일 : 2009. . .

제출자 : 제천시장

2009년 2월 20일 제천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 유

○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983(2009. 3. 4)에 의하면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3조에서도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이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법령의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령의 범위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추13판결). 또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헌법←법률←명령←조례의 순서와 같이 두 법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임.
- 제천시가 제정한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호나목 중 "지방세 징수 유예"의 규정과 관련하여 그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3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이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에서 '징수유예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②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③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④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⑤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로 특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제천시 조례 제5조제3호나목 중 '지방세 징수유예'의 규정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그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3조제1항, 제41조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게 제정되었고, 그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위반된 조례로 보고 재의요구를 지시

붙 임 : 1.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 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란 지방세를 납세자의 금융기관 거래계좌에서 제천시 세입계좌로 납부기한내 자동이체 형식으로 납부한 자를 말한다.
- 2.“전자송달 납부자”란 「지방세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
- 3.“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 납부액이 매년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3백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4. “연간(年間)”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제3조(선정대상 등)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1. 지방세 자동이체 납세자
2. 전자송달 납세자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선정) ① 제3조제1호부터 제2호는 직전년도 해당 지방세를 납부한 자를 선정한다.

②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제5조(지원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는 자동이체 연간납부 건별 세금징수 소요 비용만큼 실비로 지원한다.
2. 전자납부송달자는 지방세고지서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만큼 실비로 지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가. 지방세 세무조사 1회 유예
 -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 다. 성실납세자 표창

제6조(선정시기)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은 매년 1월달에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제7조(명부관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지원하고 그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 (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등 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타자치단체 조례]

청원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2006. 12. 8)

-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 다.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2007. 4. 2 조례 제1860호)

-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
 - 가.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 나.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진천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2009.1.12 조례 제2036호]

-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단,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은 납세자는 제외한다.

삼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2008.05.29 조례 제 612호)

-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내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논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2007. 07. 10 조례 제568호)

-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광주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2008.07.10 조례 제832호)

-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
 - 가. 구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 나.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2008.7.17 조례 제513호)

-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지방세 징수 유예, 납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 담보 완화,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2008. 01. 14. 조례 제694호)

-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 다. 모범 납세자 선정 표창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2007.05.25 조례 제 688호)

-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 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 다. 시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 대상자로 선정

2009. 3.

수 신 : 제천시의회 의장

제 목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철회를 위한 건의안

위의 건의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별 첨 : 1. 의원서명서 1부.

2.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위한 건의안 1부.

발의자 : 최종섭 의원
외 4인
(찬성자 서명 별첨)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를 위한 건의안 발의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최종섭		
劉永和	S. Y. Ho	
양기경	Yang Kyung	
조덕희	조덕희	
신경장		